

# 협력기업 상호지원 업무협약서 개정대비표

(구매기업용-협력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 있는 방식 및 확정채권 양도방식용)

## 1. 주요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b>협력기업 상호지원 업무협약서(구매기업용)</b></p> <p style="text-align: center;">(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용, 개별승낙방식, 판매기업에 대해 상환청구권 있는 경우)</p> <p>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 과 _____(이하 "구매기업"이라 하고, "은행"과 합쳐 "양 당사자"라 합니다)는 상호협력하여 구매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한 은행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기업 상호지원협약(이하 "이 협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이 협약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p> <p><b>제1조 (목적)</b> (기재생략)</p> <p><b>제2조 (협력기업의 정의)</b> 이 협약에서 "협력기업"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용역 포함, 이하 같다)을 납품하는 거래기업 중 은행으로부터 이 협약과 관련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그 담보조로 구매기업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외상매출채권(이하 "외상매출채권"이라 한다)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b>계약을 은행과 체결한 기업과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 없이 채권대금을</b> 만기수령하기 위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기업을 말합니다.</p> <p><b>제3조 (업무의 방법)</b> ① (기재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협력기업 상호지원 업무협약서</b></p> <p style="text-align: center;">(구매기업용-협력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 있는 방식 및 확정채권 양도방식용)</p> <p>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 과 _____(이하 "구매기업"이라 하고, "은행"과 합쳐 "양 당사자"라 합니다)는 상호협력하여 구매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한 은행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기업 상호지원협약(이하 "이 협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이 협약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과 <b>금융결제원의 「B2B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b></p> <p><b>제1조 (목적)</b> (현행과 같음)</p> <p><b>제2조 (협력기업의 정의)</b> 이 협약에서 "협력기업"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용역 포함, 이하 같다)을 납품하는 거래기업 중 은행으로부터 이 협약과 관련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그 담보조로 구매기업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외상매출채권(이하 "외상매출채권"이라 한다)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b>계약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관련 대출약정을 은행과 체결한 기업과 외상매출채권 대금을</b> 만기수령하기 위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기업을 말합니다.</p> <p><b>제3조 (업무의 방법)</b> ① (현행과 같음)</p>	<p>용어 수정</p> <p>준용 약관 추가</p> <p>용어 수정</p>

<p>② 협력기업은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 양도하고, 외상매출채권의 <b>지급기일</b> 전에 상환청구권 있는 방식(with recourse)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하 “전자외담대”라 합니다)을 요청할 수 있으며, 외상매출채권의 양도 없이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은행의 지급대행을 통하여 만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p> <p>③ 은행은 전자외담대가 실행된 경우에 외상매출채권의 <b>결제일에</b> 결제대금으로 전자외담대를 상환처리하며, 구매기업이 결제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경우 구매기업은 은행에 대하여 결제대금의 변제무릐, 판매기업은 은행에 대하여 전자외담대의 변제무릐를 부담합니다.</p>	<p>② 협력기업은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 양도하고, 외상매출채권의 <b>만기일</b> 전에 상환청구권 있는 방식(with recourse)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하 “전자외담대”라 합니다)을 요청할 수 있으며, 외상매출채권의 양도 없이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은행의 지급대행을 통하여 만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p> <p>③ 은행은 전자외담대가 실행된 경우에 외상매출채권의 <b>만기일에</b> 결제대금으로 전자외담대를 상환처리하며, 구매기업이 결제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경우 구매기업은 은행에 대하여 결제대금의 변제무릐를, 판매기업은 은행에 대하여 전자외담대의 변제무릐를 부담합니다.</p>	<p>용어 수정</p> <p>용어 수정</p>
<p><b>제4조 (기본 협약사항)</b></p> <p>① (기재생략)</p> <p>② (외상매출채권 명세의 통보)</p> <p>1. (기재생략)</p> <p>2. 외상매출채권의 <b>지급기일은</b> 발행일(통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서 정하기로 합니다.</p> <p>③ (외상매출채권양도에 대한 <b>승낙</b>)</p> <p><b>은행은 구매기업으로부터 통보 받은 채권명세서상의 채권에 대하여 협력기업을 대리하여 은행과 외상매출채권양수도 계약(자기계약)을 체결하고 구매기업에게 채권양도승낙을 요청하는 경우 구매기업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b></p> <p><b>(신설)</b></p> <p>④ (전자외담대의 취급 및 제한)</p> <p>은행은 제2항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통보 받은 외상매출채권의 명세를 기초로 하여 협력기업별 통보 금액 범위 내에서 협력기업에게 전자외담대를 취급하기로 합니다. <b>그러나</b> 동 협력기업이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되거나 기타 은행의 내규상 여신의 비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전산상 장애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p>	<p><b>제4조 (기본 협약사항)</b></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외상매출채권 명세의 통보)</p> <p>1. (현행과 같음)</p> <p>2. 외상매출채권의 <b>만기일은</b> 발행일(통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서 정하기로 합니다.</p> <p>③ (외상매출채권양도에 대한 <b>양도승낙</b>)</p> <p><b>1. 은행은 구매기업으로부터 통보 받은 채권명세서상의 채권에 대하여 협력기업을 대리하여 은행과 외상매출채권양수도 계약(자기계약)을 체결하고 구매기업에게 채권양도승낙을 요청하는 경우 구매기업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b></p> <p><b>2. 구매기업과 협력기업 사이에 체결한 물품 납품 계약 등에서 협력기업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구매기업의 신용을 담보로 하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이용과 관련하여 협력기업의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은행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b></p> <p>④ (전자외담대의 취급 및 제한)</p> <p>은행은 제2항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통보 받은 외상매출채권의 명세를 기초로 하여 협력기업별 통보 금액 범위 내에서 협력기업에게 전자외담대를 취급하기로 합니다. <b>다만</b> 동 협력기업이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되거나 기타 은행의 내규상 여신의 비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전산상 장애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p>	<p>용어 수정</p> <p>용어 수정</p> <p>용어 수정</p> <p>호 번호 신설</p> <p>범무법인 검토 의견 반영을 위한 호 신설</p> <p>용어 수정</p>

구매기업의 채권양도의 승낙효력이 제3자에 대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즉시 그 사실을 구매기업과 협력기업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⑤ (외상매출채권의 지급)

1. 구매기업은 제2항에 따라 은행에게 전산으로 통보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는 그 명세에 기재된 지급기일에 은행의 영업시간 이내에 아래와 같이 본인 명의의 계좌로 그 명세에 기재된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입금하기로 합니다.  
[하나은행에 개설한 본인명의로의 결제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

예금주	예금주 <u>사업자번호</u>	계좌번호

2. 만기도래된 외상매출채권 대금은 별도의 청구서 없이 인출하여 전자외담대 취급분을 우선 변제하고, 미취급 분은 접수일자 순,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협력기업에게 지급처리하기로 합니다.

3. 결제계좌는 전용계좌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통장예금자동대출계좌나 당좌대출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경우 영업시간 중 구매대금 결제로 인하여 일중대출이 발생하더라도 대출취급 및 이자징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4. 지급기일에 구매기업이 제1호에서 약정한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협력기업의 매출채권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서 정한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협력기업의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기로 합니다.

5. 협력기업의 전자외담대 신청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은 구매기업으로부터 입금받은 채권대금을 그 지급기일에 별도의 수수료를 공제함이 없이 전호에 따라 협력기업에게 지급처리하기로 합니다.

6. 은행은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 없이 채권대금을 만기수령하기 위한 협력기업에 대해서는 그 외상매출채권 처리에 관한 책임이 구매기업에게 있기로 하는 조건으로 제2호에 따라 지급대행업무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구매기업의 채권양도의 승낙효력이 제3자에 대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즉시 그 사실을 구매기업과 협력기업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⑤ (외상매출채권의 지급)

1. 구매기업이 이 협약에 따라 은행에게 통보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는 구매기업 및 협력기업 간의 법률관계와 무관하게,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의 변제무를 부담하는데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며, 그 명세에 기재된 만기일에 은행의 영업시간 이내에 아래와 같이 본인 명의의 계좌로 그 명세에 기재된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입금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

[하나은행에 개설한 본인명의로의 결제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

예금주	예금주 <u>사업자등록번호</u>	계좌번호

2. 결제계좌는 전용계좌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통장예금자동대출 계좌나 당좌대출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경우, 영업시간 중 구매대금 결제로 인하여 일중대출이 발생하더라도 대출취급 및 이자징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3. 만기일이 도래된 외상매출채권 대금은 별도의 청구서 없이 출금하여 전자외담대 취급 분을 우선 변제하고, 미취급 분은 접수일자 순,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협력기업에게 지급처리하기로 합니다.

4. 협력기업의 전자외담대 신청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은 구매기업으로부터 입금 받은 채권대금을 그 만기일에 별도의 수수료를 공제함이 없이 제 3 호의 방법으로 협력기업에게 지급처리하기로 합니다.

5. 만기일에 구매기업이 제 1 호에서 약정한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협력기업의 매출채권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 3 호에서 정한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기로 합니다.

6. 외상매출채권의 결제처리 중 결제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이 제 3 호에서 정한 결제순서에 해당하는 건 별 외상매출채권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며 결제계좌 잔액보다 금액이 적은 채권이 없을 경우에는 결제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검토 의견 반영한 문구 수정

용어 수정

업무절차에 따른 문구 수정

상동

상동

상동

상동

<p>⑥ (외상매출채권의 취소 및 변경)  구매기업이 제3항에 따라 이의 없는 승낙을 한 이후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매기업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 통보한 외상매출채권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 <b>그러나</b> 은행이 협력기업에게 전자외담대를 실행한 후에는 구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통보 당시의 외상매출채권 명세에 따른 금액을 제5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합니다.</p> <p>1. <b>구매기업이, 협력기업이</b> 당시까지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5. (기재생략)</p> <p>⑦ (외상매출채권 지급채무의 범위)  제2항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통보 받은 외상매출채권의 명세를 기초로 하여 외상매출채권금액 범위 내에서 은행이 협력기업에게 전자외담대를 실행한 이후에는 구매기업은 협력기업의 채권자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의 <b>압류 또는 가압류의</b> 통지를 받거나, 협력기업으로부터 제3자에게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거나, 세무서 또는 조세공과당국으로부터 체납처분 통지를 받는 등 외상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외상매출채권의 <b>지급기일에</b> 은행에게 그 대금을 제5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합니다.</p> <p>⑧ (<b>외상매출채권</b> 관리 및 통지)  <b>협력기업의 채권자가 외상매출채권을 압류(과세당국의 체납처분 포함) 또는 가압류 하거나 협력기업으로부터 자신이 제3자에게 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는 등 매출채권의 효력에 영향을 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구매기업은 은행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기로 하며 은행은 구매기업으로부터 이러한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즉시 협력기업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기로 합니다.</b></p> <p>⑨~⑩ (기재생략)</p> <p><b>제5조 (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 총 대출한도 및 지급의무)</b></p> <p>① (기재생략)</p> <table border="1" data-bbox="100 1388 996 1476"> <tr> <td>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td> <td>금</td> <td>원</td> </tr> </table>	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	금	원	<p>⑥ (외상매출채권의 취소 및 변경)  구매기업이 제3항에 따라 이의 없는 승낙을 한 이후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매기업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 통보한 외상매출채권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 <b>다만</b>, 은행이 협력기업에게 전자외담대를 실행한 후에는 구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통보 당시의 외상매출채권 명세에 따른 금액을 제5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합니다.</p> <p>1. <b>협력기업이</b> 당시까지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5. (현행과 같음)</p> <p>⑦ (외상매출채권 지급채무의 범위)  제2항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통보 받은 외상매출채권의 명세를 기초로 하여 외상매출채권금액 범위 내에서 은행이 협력기업에게 전자외담대를 실행한 이후에는 구매기업은 협력기업의 채권자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의 <b>(가)압류의</b> 통지를 받거나, 협력기업으로부터 제3자에게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거나, 세무서 또는 조세공과당국으로부터 체납처분 통지를 받는 등 외상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외상매출채권의 <b>만기일에</b> 은행에게 그 대금을 제5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합니다.</p> <p>⑧ (<b>양도받은 채권의</b> 관리 및 통지)  <b>구매기업은 은행이 양도받은 외상매출채권을 성실히 관리하여 은행의 협력기업에 대한 대출금 채권보전에 적극 협조하고, 협력기업의 채권자가 위 외상매출채권을 (가)압류하였거나 협력기업으로부터 제 3 자에게 위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는 등 은행이 협력기업으로부터 양도받은 외상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기로 합니다.</b></p> <p>⑨~⑩ (현행과 같음)</p> <p><b>제5조 (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 총 대출한도 및 지급의무)</b></p> <p>① (현행과 같음)</p> <table border="1" data-bbox="1030 1388 1926 1476"> <tr> <td>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td> <td>금</td> <td>원</td> </tr> </table>	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	금	원	<p>용어 수정</p> <p>용어 일부 삭제</p> <p>용어 수정</p> <p>용어 수정</p> <p>용어 수정</p>
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	금	원						
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	금	원						

협력기업에 대한 총 대출한도	금 원				
이자율 등	<input type="checkbox"/> 고정금리	<input type="checkbox"/> 협약기간 만료일까지 연( )%			
	<input type="checkbox"/> 변동금리	<input type="checkbox"/> 기준금리( ) + ( )%			
		<input type="checkbox"/> 기준금리( ) + 기간별가산금리			
		1-	16-	46-	76-
	1	4	7	1	1
	5	5	5	0	8
	일	일	일	일	일
	( )	( )	( )	( )	( )
	%	%	%	%	%
지연배상금률	지연배상금률은 제 5 조에 의해 결정된 이자율에 아래의 연체가산율을 더하여 결정합니다. 단, 최고지연배상금률은 연 %로 합니다.				
	연체가산율이 ( )개월 이하인 경우 : 연 %				
	연체가산율이 ( )개월 이하인 경우 : 연 %				
	연체가산율이 ( )개월 초과인 경우 : 연 %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변 제 방 법	개별 외상매출채권의 <b>지급기일</b> 에 변제하기로 합니다.				

※ 은행영업시간 마감 이후 지정계좌 입금 분은 당일 중 변제처리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구매기업은 제1항에 의해 대출 취급된 외상매출채권에 대해 변제의무를 지며, **지급기일**에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변제해야 할 금액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 및 방법으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6조 (협력기업의 대출신청 방법 및 대상)**

①~② (기재생략)

③ 은행의 **전산상의 사유**로 해당일에 대출을 취급치 못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협력기업에 대한 총 대출한도	금 원	
이자율 등	<input type="checkbox"/> 기준금리( ) + 가산금리( )%	
	<input type="checkbox"/> 협약기간 만료일까지 연( )%	
지연배상금률	지연배상금률은 제5조에 의해 결정된 이자율에 연체가산율 ( )%를 더하여 결정하며, 최고 연( )%로 합니다.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변 제 방 법	개별 외상매출채권의 <b>만기일</b> 에 변제하기로 합니다.	

※ 은행영업시간 마감 이후 지정계좌 입금 분은 당일 중 변제처리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구매기업은 제1항에 의해 대출 취급된 외상매출채권에 대해 변제의무를 지며, **만기일**에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변제해야 할 금액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 및 방법으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6조 (협력기업의 대출신청 방법 및 대상)**

①~② (현행과같음)

③ 은행의 **전산 상 장애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로 해당일에

이자율 적용 기준 반영

여신거래약정서 (기업용)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용어수정

문구 수정

문구 수정

